
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!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


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?
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!

신고 시행일

2021년 6월 1일(화)

신고 의무인

임대차계약당사자 : 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

신고 대상

- 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
- ②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
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-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
신고 서류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
신고 방법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<http://rtms.molit.go.kr>) 온라인신고 또는
주택 소재 신고관청(읍·면·동·출장소) 방문신고

신고시 혜택

- ① 확정일자 신고 의제 ⇒ 익일 대항력 발생
- ②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(600원)

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**1533-2949**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<http://rtms.molit.go.kr>)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(읍면동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